

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

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.01.01.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 개정된 세법을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변경전·후 세부사항

구분	기존	2018년 4월~12월	2019년 이후
과세최저한도	250,000원	166,666원	125,000원
필요경비 공제율	80%	70%	60%
<u>72,73,75,76번</u> 코드의 소득세율	4.4%	6.6%	8.8%

2. 일괄 업데이트 대상 : 참여인력 인건비지급계획

★ 아래의 ‘가~마’ 조건이 모두 충족된 데이터만 참여인력신청내역의 최종차수의 다음차수로 승인 데이터가 생성됨 (변경되는 소득세율로 계산하여 일괄 생성)

가. 과제관리 > 연차과제관리 > 진행상태 : 진행

※ 중단, 완료는 대상에서 제외

나. 참여인력신청내역의 최종차수가 승인상태

※ 임시저장, 신청, 보완요청 상태의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

다. 인건비지급계획 > 기타소득 : 76번(강연료 등) 코드

※ 62번(그 외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)은 대상에서 제외

라. 인건비지급계획 > 지급월 : 전체 대상

※ 2019-01부터가 아닌, 전체 지급월을 대상으로 함 (지급시점 기준으로 소득신고하므로)

마. 인건비지급계획 > 처리구분 : 미지급

※ 지급확정, 신청, 보완요청 등 미지급 외 지급상태는 제외

바. 변경사유 기재 내용 :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

3. 업데이트로 인한 시스템 사용불가 일정

2019.01.02.(수) 09:00 ~ 10:00

4. 기관 대표담당자 ★12.24(일)까지 필수 이행사항

개선요청함에 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지급계획 일괄 업데이트 요청’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등록된 기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, 미희망 기관도 ‘해당없음’으로 등록해주세요.

- 첨부 1.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 1부
2.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부
3. 소득세법 제21조 1부